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1054호 2015. 8. 18(화)

### ◀입 법 예 고▶

-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5-70호) ..... 2
-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안(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15-114호) ..... 9

### ◀ 고 시 ▶

-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제2015-88호) ..... 14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제2015-2호) ..... 16

회 람									
--------	--	--	--	--	--	--	--	--	--

**입 법 예 고**

포항시 공고 제2015 - 70호

**공 고**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시장이 구청장, 읍·면·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고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안 별표 1)**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신설)
  - 포항시 사무내부위임규정 ⇄ 포항시 사무위임규칙
  - ※ 시세 부과징수권과 도세 부과징수권 일치
- 납세의 고지, 납세증명서 발급, 도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체납처분, 도세 비과세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등

나. 읍·면·동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안 별표2)

- 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 교부, 결손처분(도세 건당 30만원 미만) 등

다. 사업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안 별표3)

-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자진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급 등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5. 개정규칙안 : 붙임

6. 입법예고 기간 : 2015. 8. 6 ~ 2015. 8. 25(20일)

7.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86, FAX 270-2070)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 및 재위임 사항)** ①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 ②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 ③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별표1】

##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권 명	근 거 법 령
경제노동과	1.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신고의 접수 나.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의 실시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78조
재정관리과	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납세의 고지 나. 납부기한의 연장 및 취소 다. 서류의 송달 라. 납세의무의 확정 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 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사.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아. 부과취소 및 변경 자. 독촉과 최고 차. 납세증명서의 발급 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처리 파. 관허사업의 제한 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하. 교부금전의 예탁 거. 납기 전 징수 너. 도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더. 징수유예 러.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머. 체납처분 버. 결손처분 서. 교부청구 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저. 도세 비과세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처. 도세 감면 및 면제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기본법 제55조부터 57조까지 같은 법 제26조부터 27조까지 같은 법 제28조부터 33조까지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5조부터 49조까지 같은 법 제50조부터 52조까지 같은 법 제53조부터 54조까지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6조부터 79조까지 같은 법 제80조부터 84조까지 같은 법 제85조부터 90조까지 같은 법 제91조부터 95조까지, 제98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제140조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도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식품위생과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47조
환경관리과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건물건설공사 2,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 10,000㎡ 이상, 또는 공사면적 10,000㎡ 이상 또는 도로공사 총연장 2,000m 이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항만 내 저탄사업장, 수상화물 취급업은 제외)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수리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3항
건설과	1. 지방1급 및 지방2급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천 부속물 관리 나. 하천의 감시(하천감시원 임명 제외)	하천법 제16조 같은 법 제68조,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도시계획과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가의 산정 나. 부담금의 결정·부과(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납부의 고지 라. 부담금의 추징 마. 물납의 인정 및 징수 바.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사.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아. 납부의 독촉 자. 체납처분 카. 제출된 자료의 접수 타. 자료의 통보 및 접수 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하.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 현지확인 및 통지 거.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너.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산출 의뢰 더. 사실조회 등의 조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7호

## 【별표 2】

##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권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재정관리과	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 교부 나. 체납액 징수 다. 체납처분 대상자 조사 라. 체납처분 예고문 및 서한문 발송 마. 결손처분 대상자 조사 바. 결손처분(도세 건당 30만원 미만) 사.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과세자료 조사 및 과세대장 정리 아. 읍면동에 위임된 인·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접수처리 자.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타.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카.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 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61조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22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 제98조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43조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같은 법 제96조 지방세법 제141조부터 제147조 같은 법 제8조, 제30조 지방세 기본법 제63조 지방세 기본법 제6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장 읍·면·동장

## 【별표 3】

##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재 정 관리과	1. 도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자진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급  나.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납부 징수(감액) 결정  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오납금 환부결정  라.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비과세·감면신청 처리 및 감면확인서 발급(다만, 추징하는 경우 제외)  마. 체납처분(다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민원의 도세 체납에 관한 자동차 및 기계장비 압류 해지에 한함)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지방세법 제30조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지방세법 제91조부터 제95조	도시건설 사업소 (차량등록과)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15-114호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의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8. .

포 항 시 장

##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안

### 1. 제정이유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운영 및 위탁관리(안 제3조)
- 나. 수탁자의 의무(안 제6조)

### 3. 관계 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1조

### 4. 조례안 :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9. 1.(화)까지 포항시장(참조 : 하수도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출처 : 054)270-5413, 팩스 054)270-5399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포항시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포항시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포항시 포항철강산업단지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도 시설물”이란 빗물펌프장, 구무천, 간선배수구, 오·우수관을 말한다.
2. “위탁지역”이란 포항철강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제 1,2,3,4단지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는 포항시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관리업무 인가를 받은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제5조(위·수탁협약)** 제4조에 따른 하수도 시설물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해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운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감 독)**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상황을 조사하거나 그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5 - 88호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09-66호(2009.07.2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의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포항시청 건축과(054-270-360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10일

포 항 시 장 (관인생략)

1. 정비구역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2. 정비계획 수립

-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사항(변경없음)
-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6)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7)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변경)

기정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년이내 사업시행인가
변경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7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8)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11)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없음)
-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 15) 기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1)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4.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5. 관계도면(변경없음)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고시 제2015 - 2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18.

### 포 항 시 장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북구 중앙동(동빈2가, 학산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도로 : 소로3류357호선, 소로3류182호선)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소3-357 개설, 도시계획도로 소3-182 개설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장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도시계획도로 소3-357 개설	포항시 동빈2가 146번지 일원	도로개설 (L=92m, B=6m)	실시계획인가일 ~ 2016.12.31	포항시장
도시계획도로 소3-182 개설	포항시 북구 학산동 112-20번지 일원	도로개설 (L=35m B=6m)	실시계획인가일 ~ 2016.12.31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소로3류357호선(포항시 북구 동빈2가)

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18,902	539					
1	동빈 2가	146	도로	18,759	531		국 (건설부)			
2	동빈 2가	113-102	대	143	8		포항시			

②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내용	
1	동빈 2가	146 (115-18)	창고	슬래브	㎡	6.96	포항시 북구 삼호로 8번길 21-1 (동빈2가)	박완목			
			창고	조립식	㎡	3.36					
			까추	함석	㎡	32.00					
			마당	콘크리트	㎡	117.00					
			담장	블록	㎡	8.96					
			보안등	철재	EA	2.00					
			조경수	수목	주	12.00					
			냉방기	전자제품	EA	2.00					
2	동빈 2가	146 (121-7)	담장	블록	㎡	19.50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31-15 평안빌라 101동 502호	김장화 외1인			
			담장기초	콘크리트	M	15.00					
			주차장	콘크리트	㎡	8.00					
3	동빈 2가	146 (121-2)	담장	블록	㎡	23.42	포항시 북구 서동로 107번길 15, 503호	이용숙			
			담장기초	콘크리트	M	13.40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명	권리종류및내용	
4	동빈2가	146 (113-72)	조경 및 과실수	수목	주	14.00	포항시 북구 동빈로 58, 축복웰빙타운 201호	서종근			
5	동빈2가	146 (113-72)	과실수	수목	주	1.00	포항시 북구 동빈로 58, 축복웰빙타운 802호	윤출이			
			조경 및 과실수	수목	주	8.00					
6	동빈2가	146 (121-4)	가옥	스레트	m <sup>2</sup>	30.60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21-4	정순난			
			가옥	조립식	m <sup>2</sup>	0.99					
			담장	블록	m <sup>2</sup>	15.04					
7	동빈2가	146 (121-3)	냉동창고	스레트	m <sup>2</sup>	42.24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21-3	김현식			
			창고	조립식(2F)	m <sup>2</sup>	32.76					
			담장	블록	m <sup>2</sup>	29.82					
8	동빈2가	146 (121-1)	건물	슬래브	m <sup>2</sup>	30.00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21-1	이복희			
			담장	블록	m <sup>2</sup>	115.32					
			조경수	소나무	주	75.00					
			조경수	잣나무	주	15.00					
			조경수	기타	주	8.00					
			보도	콘크리트	m <sup>2</sup>	18.00					
			물탱크	FRP	EA	1.00					

▶ 소로3류182호선(포항시 북구 학산동)

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226	226					
1	학산	211-20	대	111	111		포항시			
2	학산	203-11	대	25	25		포항시			
3	학산	211-17	대	75	75	포항시 북구 장미길 8-12(학산동)	손찬익			
4	학산	203-9	학	15	15		포항시			

②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학산	211-17	창고	판넬조	㎡	18.7	포항시 북구 장미길8-12 (학산동)	손찬익			
			까추	슬레이트	㎡	3.8					
			본동	판넬조	㎡	108.2					
			마당	콘크리트	㎡	21.1					
			화단	화단블럭	m	6.0					
			장독대	블록조	㎡	2.4					
			화단	블록조	m	6.8					
			정화조	-	개소	1.0					
			계단	블록조	m	10.5					
			계단	블록조	m	0.8					
			담장	목조	㎡	5.6					
			비닐하우스	-	식	1.0					

※ 관계 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로과 및 남.북구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로과(☎054-270-3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